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역할

김보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

농촌의 난개발과 농촌다움 훼손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은 농촌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과반이 거주하고 있다. 2000년에 21.7%였던 농가 고령화율은 2022년 49.8%에 달하며, 2020년 기준으로 1,404개 읍·면 중 908개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농촌의 성장 잠재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도시는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택 및 환경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고 용도지구 등을 통해 조밀하게 관리된다. 반면에 농촌지역은 농지와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가 허용되다 보니, 주택·상업시설·공장·농업시설 등이 한 공간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체계적인 공간관리가 어렵다 보니 악취와 오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민간·공공 투자를 어렵게 하여 농촌의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농촌 거주 또는 농촌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생의 공간으로서 농촌이 갖는 가치와 미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였고, 농촌에서의 창업활동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0만 명가량

이 귀농·귀촌하였고, 그중 절반은 40세 미만이다. 5년 내에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고자 준비하는 도시민도 31%에 달한다. 농촌의 농식품산업 분야 연간 창업 건수도 2010년에는 990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3,19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회적 경제조직도 7,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난개발이 전국에서 이뤄지고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서면서 농촌다운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촌 자원을 보전하고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농촌공간을 만드는 데 기존의 공간 계획체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하에,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도록 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2023.3.28.)되었고, 2024년 3월 29일 시행되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무엇을 담고 있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다움의 회복과 농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 체계’, ‘농촌특화지구’, ‘주민협정 및 농촌협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지역 단위의 중장기 계획 수립은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이 지닌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는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에서 특색 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계획이다. 국가 차원에서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기본방침,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사업계획인 5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또한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토지이용체계인 농촌특화지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주거, 산업, 축산, 재생에너지, 경관 등 농촌의 다양한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에는 유사 시설이 계획적으로 입지하도록 유도한다. 농촌특화지구를

중심으로 주민협정을 통한 상향식 토지이용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재정 지원 및 제도적 특례도 연계할 계획이다.

주민협정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개발·관리에 필요한 자치규약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협정으로 농촌특화지구의 안정적인 현장 도입과 안착을 돕는다. 해당 농촌공간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주민협정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으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가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제까지 총 53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의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로서 기능하며,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농촌의 기능을 회복·증진하는 사업의 통합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군에 지원 가능한 대상 사업 목록을 22개 제시(2024년 기준)하였고, 시·군은 그중 지역의 비전과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등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에 정책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농촌지역 대상의 투자와 정책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사업 추진 및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중앙 및 지자체에 둘 수 있으며, 농촌공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농촌공간 관련 계획 및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촌공간중앙정책심의회를, 시·도 및 시·군에는 농촌공간광역·기초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국민 모두의 행복 실현공간, 농촌

농촌공간계획제도가 실행됨에 따라 농촌은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 대상으로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중심으로 주거 및 정주 인프라, 경제 기반, 사회서비스 등이 확충될 계획이다. 농촌에서의 삶을 매력적으로 여겨 반농반X,^{*} 5도 2촌 등 새로운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농촌 관계인구 등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 창업 등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그리고 농촌공간이 농촌다운 농촌, 국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촌주민·도시민·전문가와 지역 경영체 및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농촌공간 계획제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참고문헌

- 1 송미령, 성주인, 손학기, 한이철, 민경찬, 서형주. (2021).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실증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심재현, 정문수, 한이철, 민경찬, 정학성. (2021). 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이상호, 김필. (2022).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4 통계청. (2020). 귀농어·귀촌인 통계.

* 반(半)은 자급적인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하는 삶